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40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5월 25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및 시설관리, 공연예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

나. 2021회계연도 1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1) 사무명 : 세종문화회관 출연금

2)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

3) 사무내용

- 세종문화회관의 운영
-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
-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보급 및 조사·연구
-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
-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

나. 추정개요

1) 추정금액 : 843,632천원

- 총 출연금액 35,362,789천원 (기정 출연금액 34,519,157천원)

※ 예산심의과정에서 금액 변동 될 수 있음

2) 출연금 편성 내용

- 임대료 감면에 따른 수입감소분 보전 : 97,476천원
- 삼청각 하반기 시설 및 운영비 지원 : 746,156천원

2) 추정필요성

- 코로나19 관련 임대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분 보전
 -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객석 띄어앉기 등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, 코로나 19 방역대책 시행으로 인한 지출 증가 등 재단 재정상황 악화
 -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정책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세종문화회관 임차인(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포함) 지원을 위해 6개월 간 임차료의 50% 감면 조치하였기에 이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지원 필요

- 삼청각 하반기 시설 및 운영비 지원('21.8~12월)

- 서울시 계획에 따라 삼청각은 '전통문화공연과 한식체험'을 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 중으로 21.9월 재개관 준비 중에 있음
- 당초 '수익창출형' 위탁사업과는 달리, 삼청각은 리모델링 공사 중에는 '행정재산관리위탁'에 의거, 재산관리 업무(시설· 안전관리등)를 수행하였으며, 영업중단(휴업))에 따른 무기계약직(21명)에 대해 휴업수당(평균임금 70%)을 지급하고 있음
- '행정재산 관리위탁' 이 '21.7.31'자로 만료됨에 따라, 하반기('21.8~12월)에 대한 무기계약직 2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함

*행정재산관리위탁(1차): '20.7.1~'21. 7.31

*행정재산관리위탁(2차): '21.8.1~'25.12.31 (5월중 체결 예정)

-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단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 삼청각 재개관을 위한 시설운영비 및 삼청각 소속 근로자 인건비(21명)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이 필요함

다.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기관 개요

1)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

2) 규 모 : 대지 55,758 m^2 , 건물 63,396 m^2 (지하 3층, 지상 6층)

- 공연장(세종대극장, M씨어터, 체임버홀, S씨어터), 전시관(세종미술관, 세종충무공이야기), 교육시설(세종예술아카데미) 등

3) 전경 및 위치도

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의 결을 얻어야 한다.

2)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,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)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(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)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16조(사용료의 조정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·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(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)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

3)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

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, ..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나. 관련 방침 :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

(자산관리과-14889, 2020.12.31)

1) 사유재산 6개월 간 임대료 50% 감면 및 공용관리비 감면

2) 임대료 환급·감면에 따른 환급분, 손실분 등은 추가경정예산 편성

다. 예산조치 : 2021년도 1차 추경예산 편성

라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문화정책과 문화협력팀 이혜숙 (☎ 2133-2527)

2021년 추경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'21년도 출연금 추경(안) : 35,362,789천원 (↑ 843,632천원)

- 코로나19 세종문화회관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: 97,476천원
- 삼청각 하반기 시설 및 운영비 지원(8월~12월) : 746,156천원

산출내역

-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: 97,476천원
 - 감면 내역(8개소)

	시설명	입주업체		21년 사용료(연간)	감면액	영업 일수	비고
		상호	대표자				
회관	악기점	조유직	조병문	27,751,016	6,880,731	181	
	카페	카페베네	박정신	180,100,000	32,319,315	131	21.2.20. 계약체결 50일 제외
부서 출 금 의 순	카페	전망대	안현정	67,217,550	10,280,601	145	20.12.7~21.2.5. 휴업 일수 36일 제외
		테라스	안현정		3,833,241	181	
	레스토랑	라포레스타	이경애	64,407,620	15,969,560	181	
	편의점	이마트24	정석윤	96,764,700	19,193,874	181	
		스낵하우스	정석윤		4,798,468	181	
	카페	베이커리	박진석	33,330,000	4,200,493	92	21.1.1. ~ 21.3.30. 휴업일수 89일 제외
합계				469,570,886	97,476,283		

- 감면 산출내역

연 번	상호	산 출 내 역		비고
1	조유직	27,751,016원 / 365일 * 181일 * 감면비율 50% = 6,880,731원		회관
2	카페베네	180,100,000원 / 365일 * 131일 * 감면비율 50% = 32,319,315원		
3	카 페	전망대	(67,217,550원 * 면적비율 77%)/365일 * 145일 * 감면비율 50 % = 10,280,601원	북서울
		테라스	(67,217,550원 * 면적비율 23%)/365일 * 181일 * 감면비율 50 % = 3,833,241원	
4	라포레스타	4,407,620원 / 365일 * 181일 * 감면비율 50% = 15,969,560원		
5	편 의 점	이마트 24	(96,764,700원 * 면적비율 80%)/365일 * 181일 * 감면비율 50 % = 19,193,874원	
		스빅 하우스	(96,764,700원 * 면적비율 20%)/365일 * 181일 * 감면비율 50 % = 4,798,468원	
6	베이커리	33,330,000원 / 365일 * 92일 * 감면비율 50% = 4,200,493원		

○ 삼청각 하반기 시설 및 운영비 지원(8월~12월) : 746,156천원

- 산출내역

- 인건비(급여· 제수당 등) 385,875천원
- 일반관리비(4대보험, 공공요금, 일반운영비 등) : 243,762천원
- 시설운영비(시설용역, 시설유지, 안전관리비 등) : 556,730천원
- 삼청각 별채 임대수입 (4개월분) : △ 440,211천원

- 세부 산출내역

과목구분	산출내역 및 증감사유	
출 연 금	○코로나19 피해 세종문화회관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97,476천원*1식	= 97,476천원
	○삼청각 하반기 시설 및 운영비 지원(8월~12월)	= 746,156천원
	-인건비(급여,제수당 등) 월3,675천원*무기계약직 21명*5개월	= 385,875천원
	-일반관리비(4대보험,일반운영비 등)	= 243,762천원
	▷ 4대보험(사용자부담금) 월9,065천원*5개월	= 45,325천원
	▷ 일반운영비(공공요금, 사무관리비 등) 월39,687천원*5개월	= 198,437천원
	-시설운영비	= 556,730천원
	▷ 시설용역 월81,340천원*5개월	= 406,700천원
	▷ 시설유지 월17,444천원*5개월	= 87,220천원
	▷ 안전관리비 등 월12,562천원*5개월	= 62,810천원
	-삼청각 별채 임대 수입(4개월분)	= -440,211천원
		증감사유
	0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세종문화회관 입점 임차소상공인 21년 상반기(1~6월) 임대료 감면에 따른 운영예산 부족분 지원 등(조류직 등 8개소, 97,476천원) 0 21년 8~12월 삼청각 시설 및 운영비 지원(1,186,367천원)에서 삼청각 별채 임대수입 4개월분(440,211천원) 상계하여 반영(746,156천원)	